



오크데일 수도국 기타 방침과 절차

1 - 재정	장 4 - 농촌수도시스템	항 4.102 농촌수도시스템의 주거용 체납 계정을 위한 수금과 서비스 종료 방침
채택됨:		수정됨: 8장의 1

1. 일반적인 방침과 허가.

- A. **목적.** 이 방침은 통지, 추가요금 부과, 서비스의 복구와 중단에 관한 체납된 주거용 수도계정을 처리하기 위한 오크데일 수도국(수도국)의 방침과 절차를 설명한다. 이 방침은 지역구의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방침의 약관에 따른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중단을 막기 위한 방법을 의논하려면 (209) 847- 0341로 연락한다.
- B. **허가법.** 캘리포니아 수도법 22280항에 따라서, 지역구는 주거용 수도배달료를 수정하고 수금할 권한이 있다. 2020년 4월1일부터, 지역구는 상원법안998 (“SB 998,” 건강안전법 §§ 116900항 등으로 현재 제정된 단수보호법으로 알려짐) 의무조항을 따른다. SB 998에서 체납으로 주거용 수도서비스가 중단되기 전에 준수할 절차를 규정한다.
- C. **출판 언어.** 이 방침과 이 방침에 따른 통지서는 영어와, 민사법1632항에 나온 언어, 지역구의 서비스지역에 거주하는 최소한 10퍼센트 주민이 사용하는 언어로 찾아볼 수 있어야 하고 출판되어야 한다.

2. 체납; 연체료와 부도수표 수수료.

- A. 매월 주거용 수도요금에 나온 액수는 받고 나면 납부해야 한다.
- B. 발급된 고지서의 청구주기 말에 고지서에 나온 일부분이나 전체 요금이 미납이고 납부약정이나 별도납부일정을 정하지 않았으면 계정이 체납이 된다.
- C. 계정이 15일 이상 체납이면 연체료가 부과될 것이다.
- D. 자금 부족을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는 이유로 고객의 금융기관이 유통불가능으로 수표가 부도처리되는 경우, 부도수표 수수료가 부과되고 시도한 요금납부를 한 적이 없는 것처럼 계정을 처리하게 된다. 서비스 중단일로부터 48시간에 부도 수표로 요금을 납부하면, 지역구는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를 중단하기 최소한 48시간 통지서를 제공하게 된다. 통지서는 지역구 직원이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주게 된다. 부도수표 금액을 배상하고 부도수표 수수료를 납부하려면, 현금이나 신용카드, 공인 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3. 체납계정의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 A. 지역구는 계정이 최소한 60일 이상 체납될 때까지 미납으로 주거용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오크데일 수도국 기타 방침과 절차

1 - 재정	장 4 - 농촌수도시스템	항 4.102 농촌수도시스템의 주거용 체납 계정을 위한 수금과 서비스 종료 방침
채택됨:		수정됨: 8장의 3

4. 주거용 수도요금을 항소하는 고객의 권리.

- A. 불만신고를 시작하거나 조사를 요청할 시기. 고객은 고지서의 납부일전까지 아무때나 주거용 수도고지서에 포함된 요금을 분쟁할 수 있다. 정상근무시간에 문서나 전화로 불만신고를 제출하거나 지역구의 조사를 요청하여 분쟁이 시작될 수 있다. 요금과 연체료의 최종 항소는 이사회가 공개 회의에서 결정하게 된다. 지역구는 재량으로 때늦은 불만신고나 조사 요청을 재고한다. 하지만, 때늦은 불만신고나 요청은 지역구 이사회에 항소할 수 없다.
- B. 지역구의 재심. 불만신고나 조사 요청서를 받은 후, 최고재무책임자는 불만신고를 재고하고/혹은 최고재무책임자의 단독재량으로 정하는 적절한 조사를 한다. 최고재무책임자는 재고에서 지역구가 연장이나 별도납부약정을 허가하고/혹은 연체료를 면제할 것을 재고하게 된다. 재고와/혹은 조사에서, 지역구는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객의 납부마감일을 연장하게 된다. 하지만, 고객은 상기 3(A)항으로 규정된 60일 연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지 가능할 때, 조사가 마무리되고, 불만신고나 요청을 받고 10일 내에 최고재무책임자의 판결을 고객에게 통보받는다.
- C. 결과. 재고와/조사가 나온 후에, 최고재무책임자가 요금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할 경우, 수정내용이 고객의 계정에 적용된다. 청구서가 맞으면, 고지서요금잔액은 최고재무책임자의 판결을 고객에게 통보하고 10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 방침의 어떤 내용도 조사가 끝나기 전에 고객이 만기되는 후속요금을 납부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의도가 아니다. 고객이 후속청구서를 항소하기 바라면, 지역구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고객의 책임이다.
- D. 이사회 항소. 고객이 이 조항에 따라 불만신고나 조사 요청을 시기적절하게 하였지만 불만족스러운 판결이 내려진 고객은 지역구가 판결을 발송하고 10일 내에 지역구 이사회에 1205 East F Street, Oakdale, CA 95361이나 209-847-0341으로 전화하여 지역구 비서에게 항소통지서를 제출하여 판결을 항소할 수 있다. 항소통지서를 받고 난 후, 지역구비서는 사안을 이사회 회의에서 심리하게 되는 날짜를 정하고 회의일로부터 최소한 칠(7)일 전까지 고객에게 심리시간과 장소가 나온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이사회회의 판결은 최종적이 된다. 이사회회의 판결 후에 남은 고지서 잔액납부는 고객이 이사회회의 판결을 통보받고 10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 E. 항소가 대기 중이면 서비스 중단 금지. 항소가 대기 중이면 지역구는 미납으로 수도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



오크데일 수도국 기타 방침과 절차

1 - 재정	장 4 - 농촌수도시스템	항 4.102 농촌수도시스템의 주거용 체납 계정을 위한 수금과 서비스 종료 방침
채택됨:		수정됨: 8상의 4

5. 주거용 수도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A. 다음 조건이 전부 충족되면 지역구는 미납으로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다.

1. 수도 공급 중단이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공급받는 건물에 사는 주민의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되면 고객이나 고객의 세입자는 복지제도법 14088(b)(1)(A)항으로 정의된 용어인 주치의로부터 인증서를 받아 제출한다.
2. 고객은 지역구의 정상 청구주기에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증명한다. 고객의 가족원이 캘웁스, 캘프레시, 일반 보조금, 메디칼, 보조보장소득/ 주정부 추가 보조금 프로그램, 여성, 신생아,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영양보조 프로그램의 현재 수혜자이거나 혹은 고객이 연간 가구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 수치의 200% 이하라고 신고하는 경우 고객이 지역구의 정상 청구주기에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간주한다.
3. 고객은 체납요금에 대해 할부상환약정, 별도납부일정, 납부연기나 인하약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B. 상기 조건에 전부 부합되면, 지역구는 고객에게 다음중 한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1. 첫번째 납부 만기일로부터 12개월까지 미납잔액의 할부상환
2. 별도납부일정에 참여하기
3. 다른 요율납부인에게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고 미납잔액의 일부나 전액 할인
4. 임시 납부연기

C. 최고재무책임자는 고객이 이행하는 납부방법을 선택하고 12개월에 잔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납부방법의 범위를 정할 권한이 있다. 제한된 상황과 최고재무책임자의 단독재량으로, 지역구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고객이 부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납부기간을 더 길게 허가할 수도 있다.

D. 지역구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건물에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최종 의도 통지서를 게시한 후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7영업일 이후에 중단될 수 있다.



오크데일 수도국 기타 방침과 절차

1 - 재정	장 4 - 농촌수도시스템	항 4.102 농촌수도시스템의 주거용 체납 계정을 위한 수금과 서비스 종료 방침
채택됨:	수정됨:	8장의 5

1. 고객은 체납료에 대한 할부상환약정, 별도납부일정, 납부연기나 인하약정을 60일 이상 준수하지 않는다.
2. 체납료에 대한 할부상환약정, 별도납부일정, 납부연기나 인하약정을 이행하면서, 고객은 현재 주거용 수도요금을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는다.

6.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복구.

- A. 지역구가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중단하면, 서비스 복구비용의 납부가 포함되는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복구하는 내용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빚진 총액수와 수수료를 납부한 후, 지역구는 실행이 가능하고 다음 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 서비스를 복구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고객은 주거용 수도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지역구의 재산인 기계를 조작하면 안된다. 무허가 조작에 대해 벌금이나 수수료가 부과된다. 무허가 조작으로 발생한 손상은 고객의 책임이 될 것이다.
- B. 가구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수치의 200 퍼센트보다 적다고 지역구에 증명한 주거용 고객에게, 서비스 복구비용은 하단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이 수치는 소비자 물가지표의 변동에 따라 연간 수정된다.
 1. 정상영업시간에 서비스를 복구하면, \$50까지 또는 재연결한 실제 비용 중에서 더 적은 액수
 2. 정상영업시간 이후에 서비스를 복구하면, \$150까지 또는 재연결한 실제 비용 중에서 더 적은 액수
- C. 지역구에 가구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수치의 200 퍼센트보다 적다고 증명한 주거용 고객은 12개월에 한번씩 체납고지서의 이자를 전부 면제받을 자격이 있다.
- D. 고객의 가족원이 캘웍스, 캘프레시, 일반 보조금, 메디칼, 보조보장소득/ 주정부 추가보조금프로그램, 여성, 신생아,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영양보조 프로그램의 현재 수혜자이거나 혹은 고객이 연간 가구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 수치의 200% 이하라고 신고하는 경우 지역구는 주거용 고객은 가구소득이 연방정부 빈곤 수치의 200% 이하라고 간주한다.



오크데일 수도국 기타 방침과 절차

1 - 재정	장 4 - 농촌수도시스템	항 4.102 농촌수도시스템의 주거용 체납 계정을 위한 수금과 서비스 종료 방침
채택됨:		수정됨: 8상의 6

E. 과거 중단된 서비스에 대한 부도수표. 고객이 과거에 미납으로 중단된 수도서비스를 복구하는 납부금으로 유통불가능 수표를 내고, 지역구가 서비스를 복구한 경우, 지역구는 추가 통지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즉시 중단한다. 중단될 수도요금을 납부한 유통불가능한 수표인 경우 48시간 종료통지를 주지 않을 것이다. 미납으로 꺼진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하여 납부한 유통불가능 수표를 발급한 고객은 부도수표 납부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앞으로 서비스 중단을 복구하려면 현금, 신용카드, 보증자금으로 납부해야만 하게 된다.

7. 집주인-세입자 관계와 관련된 서비스.

A. 지역구가 분리된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모빌홈 파크 등 개별적으로 계량기가 설치된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공급하고, 주거지, 구조, 공원의 건물주, 관리인, 운영자가 기록상 고객이며, 계정이 체납된 경우, 지역구는 종료하기 최소한 10일 전에 서비스가 종료되는 사실을 주거용 고객에게 문서로 알리는 성실한 노력을 해야한다. 통지서에서 주거용 입주자들이 체납계정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고객이 될 권리가 있고, 그러면 서비스를 청구받게 된다 사실도 알려준다.

중단통지서가 배달불가능으로 우편으로 돌아온 경우, 지역구는 주거지를 찾아가서 미납으로 인한 중단통지서를 두고 오는 적절하고 성실한 노력을 할 것이다.

B. 입주한 유닛마다 최소한 주민 한 명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법과 지역구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지역구는 분리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모빌홈파크의 주거용 입주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게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주거용 세입자 한 명 이상이 지역구가 만족할 만큼 계정의 후속 요금에 대한 책임을 인수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거나, 혹은 지역구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주거용 주거용 입주자에게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종료하는 물리적 방법이 합법적으로 있는 경우, 지역구는 약관에 부합한 주거용 입주자에게 서비스를 사용하게 한다.

8. 보고요건. 지역구는 납부 불능으로 주거용 서비스가 중단된 수를 웹사이트와 주정부 수도자원통제국에 매년 보고한다.

9. 이 방침의 제한 이 방침의 어떤 내용도 고객의 무허가 행동으로 인하여 주거용 수도공급을 종료할 지역구의 역량을 구속하고, 제한하거나, 다른 식으로 해치지 않는다.